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 기관위원장 |
| 람 | |

제1430호 2019. 4. 10(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2호 인천광역시 서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6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5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5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6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 7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7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별표4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준하여”를 “월 1,100,000원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등”이란”을 “”금품 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11조의 제목“(금품등의 수수 금지)”를“(금품 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강의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별지 제2호”를 “별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을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부강의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강의등”을 각각 “외부강의 등”으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 각각 “외부강의 등”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 각각 “외부강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8항 단서 중 “외부강의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를 “초과사례금 신고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된”을 “신고 된”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품등”을 각각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6호”로,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들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해촉할”을 “해촉 할”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 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 신고인 | 성명 | |
| | 소속위원회 | |
| | 연락처 | |
| | 관련 직무 |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

| | | |
|-------|-----|--|
| 직무관련자 | 성명 | |
| | 주소 | |
| | 연락처 | |
| | 관계 |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 | |
|------|--|
| 참고자료 |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해당 의원 | 성명 | |
| | 소속위원회 | |
| | 연락처 | |
| 관련 사항 | <p>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p> <p>※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p> | |
|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p>※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p> | |
|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 | |
| 해당 의원 의견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20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 | | | | |
|--------------------------|---------|--------|-----|-------|--------|
| 기간 | 근무처(부서) | 소재지 | 대표자 | 직위(급) | 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 | | | | |
| 기간 | 업체명 | 사업의 목적 | 소재지 | 직위(급) | 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 | | | |
| 신고자 : | | | |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
| 신 고 자 | 성명 | | |
| | 소속위원회 | 연락처 | |
| | 주소 | | |
| | | | |
|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 | 직업(소속) | 연락처 | |
| | 주소 | | |
| | 법인·단체등의 경우 | 명칭 | |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
| | | | |
|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 | | |
|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 | | |
|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 | 장소 | | |
|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 |
| 증거자료 | | | |
| 비고 |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 신청자 | 성명 | 정당 | | | | | |
| | 소속 위원회 | 연락처 | | | | | |
| 활동목적 | | | | | | | |
| 활동사유 및 경과 | | | | | | |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 | | | | |
| 활동기간 | . . . ~ . . . (일간) | | | | | |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 | | | | |
| 참가자 | 소속 위원회 | 직위 | 성명 | 정당 | 활동경비 | | |
| | | | | | 금액 | 부담기관 | |
| | 합계 | | 명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월 | 일 |
| 신청자 | | |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 제 출 자 | 성명 | 정당 |
| | 소속 위원회 | 연락처 |

| | 성 명 | 직 위 | 정 당 | 소속 위원회 |
|------|-----|-----|-----|--------|
| 활동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개요 | 활동목적 | | | |
| | 지원기관(단체) | | 지원받은 내역 | |
| | 활동기간 | | 방문지역 및 기관 | |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위원회 (정당) | 연락처 |
| 청구금액 | | |
| 반환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품 (물품) | |
| | 수량 (금액) | |
| | 받은일시 | |
| | 반환일시 | |
|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사람 | 성명 | 주소 |
| | 연락처 | 청구인과의 관계 |
| | 직무관련 내용 | |
| 기타 사항 | | |
| | | 년 월 일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신 고 자 | 성 명 | 지 역 구 |
| | 소속위원회 (정당) | 선거구분 |
| 영리행위 현 황 | 명 칭 | 영리행위 기간 |
| | 직 위 | 전화번호 |
| | 보 수 | (택) 연 월 원 원 |
| | 영리행위 장소 (주소) | |
| 기 타 |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
| 신고자 | 성명 | 소속위원회 | 연락처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 | | | | |
|--------|----------|--|-----|--|
| 거래 상대방 | 성명 | | 연락처 | |
| | 신고자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 | |

직무관련 업무

| | |
|-------|------|
| 계약체결일 | 상환기일 |
|-------|------|

| | |
|-----------|------|
| 거래금액 (이율) |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 | | | | |
|--------|----------|--|-----|--|
| 거래 상대방 | 성명 | | 연락처 | |
| | 신고자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 | |

직무관련 업무

| | |
|--|-------|
| | 계약체결일 |
|--|-------|

| | |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 | | | |
|--------|----------|--|-----|--|
| 거래 상대방 | 성명 | | 연락처 | |
| | 신고자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 |

직무관련 업무

| | |
|--|-------|
| | 계약체결일 |
|--|-------|

| | |
|----|-------|
| 대상 | 거래 금액 |
|----|-------|

| | |
|------|--|
| 거래원인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 고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직업 (소속) | 연락처 | | |
| | 주소 | | | |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명 | | | |
| | 소속위원회 (정당) | 연락처 | | |
| | 주소 | | | |
| | 법인·단체등의 경우 | 명칭 | | |
| | | 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 일시 | | | |
| | 장소 | | | |
| | 내용 | | | |
| 증거자료 목록 | | | |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 |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신 고 자 | 성명 | |
| | 소속위원회(정당) | 연락처 |
| | 주소 | |
|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 직업 (소속) | 연락처 |
| | 주소 | |
| | 법인·단체등의 경우 | 명칭 |
| | | 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 장소 | |
|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 반환여부 | |
|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 증거자료 | | |
| 비고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 | | |
|-------------|--------------|-------|
| 인도자 | 성명 | 소속위원회 |
| | 정당 | 연락처 |
| 신고 접수번호 | | |
| 품목 (상표) | | |
| 수량 | | |
| 가액 (상당액) | | |
| 물품사진 |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 | |
|-------------|--------------|-------|
| 인도자 | 성명 | 소속위원회 |
| | 정당 | 연락처 |
| 신고 접수번호 | | |
| 품목 (상표) | | |
| 수량 | | |
| 가액 (상당액) | | |
| 물품사진 |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원수당 1일당 100,000원을 1일당 2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

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

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후단 중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관할 공직유관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1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9조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감독 그 밖의”를 “감독, 그 밖”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3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마을회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노인 여가문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송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 세원(함께 부과·징수된 세액 포함)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 3.“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3.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4.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 금형제작 개발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참가 지원
5. 외국어 통·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제품홍보관 운영)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관련 단체 중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활성화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입점기업 선정 심사, 입점기업간 분쟁 조정 등
 3. 기타 홍보관 운영사항 심사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4.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5.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근로자 사기진작)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산업시찰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공헌 활동 기업,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적용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

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
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신청 접수순위”를 “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헬스장”을 각각 “수영장·헬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으로 한다.

제1조 중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를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계획·조성하거나”를 “계획·조성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명”을 “조명, 방법문, 방법창 및 잠금·경보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법시설 등 침입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5조제1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의”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와”로, “경우에 디자인”을 “경우에”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과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연, 행사 계획서 1부.

제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프로그램이”를 “계획서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구청
장”을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며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불성실”을 “불성실 또는 강사평가 결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일일”을 “연간”으로, “진행결과를 일지”를 “수업일지”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원 출결상황 관리운영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수 및 비입수 지도를 병행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정차 반드시 준수”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확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